

의안번호	2205848
의 퇴 인	배준영의원
회 답 일	2024. 12. 23.
추계번호	24D5351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억 100만원, 2030년 9억 6,9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47억 900만원(연평균 9억 4,2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계	연평균
다중운집 실태조사 (안 제66조의12제1항)	901	918	952	969	969	4,709	942

주: 1. 다중운집 실태조사(안 제66조의12제1항)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 2. 본 추계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다중운집 실태조사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3. 다중운집 실태조사는 유사사례인 행정안전부의 '이면도로 보행안전 실태조사'를 활용하여 2023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1개소당 비용은 5,000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적용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6조의12제1항 (다중운집 시 재난 예방 조치)	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특정 시설, 장소 등에서 다중운집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중운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1. 다중운집의 일시 및 장소 2.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3. 공간의 수용 능력 4.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시간 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66조의12제1항 (다중운집 시 재난 예방 조치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다중운집 실태조사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- 소비자물가상승률¹⁾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
-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다중운집 실태조사를 1회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
- 본 추계에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에 다중운집 실태조사 1건당 비용을 곱하여 산출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(2024.10.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 ~
소비자물가상승률	3.6%	2.5%	2.2%	2.0%	2.0%	2.0%	2.0%

- 다중운집 실태조사 1건당 비용은 정책연구용역으로서 2023년 기준 5,000만원(행정안전부의 ‘이면도로 보행안전 실태조사’²⁾ 참고)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

[표 2] 다중운집 실태조사 1건당 비용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
1건당 비용	53	54	56	57	5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억 100만원, 2030년 9억 6,9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47억 9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개,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광역 지방자치단체 수(a)	17	17	17	17	17	—
1건당 비용(b)	53	54	56	57	57	
추가재정소요(=a×b)	901	918	952	969	969	4,70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2) 2023년에 9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액은 4억 5,0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당 5,000만원 소요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다중운집 실태조사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